

## 1.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분 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중인 분

### ①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분

보통 3개월간 유효하지만 특례로서 다음과 같이 취급합니다.

○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 사이에 작성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2022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취급합니다.

○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 사이에 작성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한 것으로 취급합니다.

※다만, 지난번 신청 내용에서 변경이 없고 2023년 1월 31일까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①이미 교부받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(원본 또는 사본) 및 ②받아들이는 기관 등이 작성한 이유서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새로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하겠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[여기](#)를 참고하여 주십시오.

### ②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중인 분

현재 신청 중인 안건에 대하여 활동 시작 시기를 변경하게 되었을 경우, 원칙적으로 **받아들이는 기관이 작성한 이유서만으로**

## 2. 재류에 관한 각종 신청 중에 재입국 허가로 출국한 분

**[중요]본 조처는 2022년 10월 11일 이후 신청된 안건은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.**

재입국 허가(간소화된 재입국 허가를 포함.)로 출국 중인 분이 출국 전에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,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, 또는 영주 허가 신청을 해둔 경우로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재입국하지 못할 때는 **일본에 있는 친족 또는 받아들이는 기관의 직원 등이 당해 신청 허가에 관련된 재류 카드를 대리 수령하는 것을 인정하고, 출국 중인 분이 재입국 허가로 상륙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.**

## 3. 재입국 허가로 출국 중에 재류기한이 경과된 분 등

**[중요]본 조처는 20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.※ 자세하게는 각 링크를 참고하여 주십시오.**

### ①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 대상이 아닌 분(‘영주자’ 등)

체재 중인 곳의 재외공관에서 사증(비자)을 신청하여 주십시오.

※‘영주자’인 분에 대해 자세하게는 [여기](#)를 참고하여 주십시오.

※‘영주자(고시 외)’ 및 ‘특정활동(고시 외)’인 분에 대해 자세하게는 [여기](#)를 참고하여 주십시오.

### ②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 대상인 분(유학생, 기능실습생, 기술·인문지식·국제업무 등)

일본에 중장기 재류자(유학생, 기능실습생 등)로 재류하던 분이 재입국 허가로 출국 중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영향으로 일본에 재입국하지 못한 채 재류기한이 경과된 경우 등으로 다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를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**신청서 및 받아들이는 기관이 작성한 이유서만으로** 심사합니다. ※자세하게는 [여기](#)를 참고하여 주십시오.

### ③ ‘고도전문직 2호’로 재류하고 계신 분

②에 따라 ‘고도전문직 1호’로서 종전의 활동에 따른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십시오.(‘고도전문직 1호’의 사증(비자) 발급 신청을 받지만, 입국 시에 일본의 공항에서 ‘고도전문직 2호’로 새로 입국하기 위한 수속이 가능합니다.)